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5년 11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14일

3. 제안이유

○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따라 장학생 선발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장학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○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 완화(안 제2조, 제4조)

○ 장학금액의 현실화(안 제6조)

○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완화 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○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자격 및 선발기준을 완화하고 장학금액의 상향 조정 등 수혜의 폭을 넓힘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명의식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○ 제6조의 조문 중 “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(최고금액)의 120퍼센트로 한다”라는 규정은 모호하고 명확성이 없어 운영에 혼선이 예상되므로,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